

# 2035년 남양주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

의안 번호	884
----------	-----

제 출 일 : 2026. 1. 27.

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「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」(2021. 1. 5. 제정, 2022. 1. 6. 시행)에 의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시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“2035년 남양주시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(안)”에 대하여
- 「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 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## 2. 관계법령

- 「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 제2항

## 3. 주요내용

-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
  -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은 「도시공업지역법」 제2조에 따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로 다산동 준공업지역(51,579m<sup>2</sup>)이 해당함
  - 산업단지는 「도시공업지역법」 시행령 제2조에 의거 “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된 공업지역”에 해당되므로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에서 제외
  - 왕숙기업이전단지의 경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에 해당하나 3기신도시와 연계하여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체계적 관리 방안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본 과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반영 예정

○ 공업지역 기본계획(안)

- 다산동 준공업지역(51,579m<sup>2</sup>)의 산업현황 분석 결과에 따라 “산업정비형”으로 공업지역 관리유형을 세분되었으나,
- 우리 시 공업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단일공장부지(빙그레)는 현재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“산업관리형”으로 설정하고,
- 소규모 사업체가 기입지해있는 재정비촉진지구와 도시계획시설부지는 “기타지역”으로 설정하고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관리되도록 함

#### 4. 추진현황

- 2025. 3. 17. : 용역 착수
- 2025. 12. 5. : 중간보고
- 2026. 1. 7. : 공청회
- 2026. 1. 12. : 관련 부서(기관) 협의

#### 5. 향후일정

- 2026. 2.. : 시의회 의견청취
- 2026. 3. : 市도시계획위원회 심의
- 2026. 4. : 공업지역기본계획 확정 및 공고

※ “2035년 남양주시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”은 「도시공업지역법」 제정·시행에 따라 수립이 의무화되어 추진 중이나, 향후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연계·병행 추진하여 시예산 절감.